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2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상암동)
- 시설규모: 65㎡(사무실, 상담실)

나. 위탁기간: 2024. 4. 13. ~ 2025. 4. 12.(1년)

다. 사업내용

-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법률 상담 및 교육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 그밖에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위탁금액: 336,224천원

2.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노동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폐업 신고 수리받은 법인,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법인, 단체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지침 위반으로 처분받은 법인 단체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4. 2. 7.(수) ~ 2. 16.(금)

나. 접수기간: 2024. 2. 13.(화) ~ 2. 16.(금)

다. 접수장소: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공모참가 관련 서류 ※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

-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평가 관련 증빙서류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의 정관 및登記부등본 각 1부(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 3)

-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청시)위임장(서식 4)
-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서(서식 5)
- 서약서(서식 6, 6-1, 6-2, 6-3)
- 필요시 기타 제출에 필요한 자료

나. 제출수량: 15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14부는 사본 제출
- A4 용지크기, 양면인쇄, 스프링 제본, 쪽번호 기재, 견출지 부착
- 파일 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하고 선정심의 PPT 발표자료는 발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별도 제출(담당자 전자메일: wins30@mapo.go.kr)

5. 선정 방법

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법인·단체 대표 또는 제안기관 소속의 관계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서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진행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30점): 사업수행실적, 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 등
- 정성평가(70점): 사업수행계획, 예산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다.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정성평가 실시 후 정량평가 점수(주관부서 사전 평가)와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확정
-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최종점으로 함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선정
- 70점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후 모집절차 진행

라. 심사 일시 및 장소: 2024. 2월 중 마포구청 10층 회의실(예정)

※ 개별 통지

마. 결과발표: 2024. 2월 중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미 선정자는 별도 통지 안함)

6. 주요 위탁운영 조건

- 가.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가 소속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목적의 특정용도로 사용 불가
- 나. 수탁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다.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공고 이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무자(센터장 제외)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라. 수탁법인(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 계약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함
- 마. 위탁시설 종사자의 복무관리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따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바.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보고하여야 함
- 아.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관한 지도 점검에 응해야 함

자.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차.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선정된 신청인은 마포구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8. 문의안내 :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93)